

제 4 호  
KIC ISSUE PAPER  
2016. 6.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박 성 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사회학 박사)

#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 I. 배경 • 6

---

- II. 자료의 수집 • 8

---

- III. 설문조사 결과 • 9

---

- IV. 판결문 내용분석 결과 • 13

---

- V. 빅데이터 분석 결과 • 18

---

- VI. 정책 제언 • 21

---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 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 요 약

- 양형기준제는 1999년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되어, 2007년 1월 26일 양형기준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양형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법에 따라 대법원은 2007년 4월 26일 위원장 1명 및 위원 12명을 구성으로 하는 양형위원회를 설치함
-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08년 처음으로 살인범죄, 성범죄, 뇌물범죄 등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졌고, 2009년 강도범죄, 횡령·배임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 7월부터 7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양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이 연구는 양형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는 물론 판결문자료, 설문조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양형기준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현행 양형기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대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서울·수도권의 8개 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한 사건 가운데 1심 판결문 총 1,878건의 자료를 수집해(성범죄군 747건, 강도범죄군 345건, 횡령·배임범죄군 786건) 양형기준제 시행이전 기간인 2003-2004년, 시행이후 기간인 2013-2014년 판결문을 비교 분석함
  - 분석 결과, 성범죄 및 강도범죄 선고형량은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증가한 반면, 횡령·배임죄의 선고형량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집행유예의 경우 성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크게 감소한

반면, 강도범죄와 횡령·배임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양형기준제와 관련한 인식 및 태도, 양형기준제 효과에 대한 국민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우리나라 법집행의 공정성과 관련해 돈이나 권력,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식은 20~30대 젊은 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소 판결보도에 관심이 높을수록, 양형기준제를 아는 사람일수록 높게 나타남
  - 양형기준제 효과성에 대한 기대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제도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양형기준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양형기준제도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양형기준제 도입과 국민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주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 트위터, 커뮤니티, 뉴스/기사보도 및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 등 총 1,215,407건의 문서(총 238,932,156개 키워드 분석)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아동대상 성범죄 혹은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엄벌주의 요구 등 정서적·감정적 반응이 많았고, 대기업총수와 관련된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권력에 따른 관대한 양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주요 키워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관예우’, ‘관행’, ‘권력’과 같은 키워드는 감소하고 ‘공정’, ‘평등’, ‘신뢰’와 같은 긍정 키워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낮다’, ‘불신’, ‘불복’ 등 부정 키워드 역시 증가하고 있어 양형결과를 중심으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양형기준의 개선방안으로는 ‘양형기준체계의 합리화 및 양형위원회의 방향 재설정’, 양형자료의 활용방안으로는 ‘양형정보의 공개 및 정례적인 양형컨퍼런스 개최’, 사법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증진을 위한 전략으

로는 ‘프레임 전략’, ‘표적집단 전략’,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범죄통계의 활용’ 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I. 배경

### ■ 양형기준제의 도입과정

- 1999년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 ①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제도, ②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③ 법조의 합리화·전문화·현대화, ④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⑤ 법조비리 근절, ⑥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사법개혁에 관한 6개의 주제가 논의되었음
- 양형기준제의 도입 문제는 이 가운데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부분에서 다루어졌는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양형관련 쟁점에는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형사판결 양형이유 기재, 양형부당 상고범위 확대 등이 포함됨
-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말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이 건의문에는 ① 양형조사관을 비롯한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도입, ② 양형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 ③ 양형인자의 추출과 계량화를 내용으로 하는 참고적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양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언급됨
-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양형자료조사제도,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양형기준 도입, 양형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하였고, 2006년 양형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송부함
- 2007년 1월 26일 양형기준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양형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법에 따라 대법원은 2007년 4월 26일 위원장 1명 및 위원 12명을 구성으로 하는 양형위원회를 설치함
- 양형위원회는 법관 위원 4명, 법무부장관 추천의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위원 2명, 교수 위원 2명,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원 2명으로 구성됨

-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08년 처음으로 살인범죄, 성범죄, 뇌물범죄 등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졌고, 2009년 강도범죄, 횡령·배임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 7월부터 7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양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 ■ 양형기준의 목적 및 구조

- 양형위원회는 설립초기 양형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① 양형의 균등성·적정성 제고, ② 형사사법의 투명화·합리화 제고, ③ 양형실무의 현대화·과학화 구현, ④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등 4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함
-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양형요소의 통계적 계량화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요소를 질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다양한 입장과 논의를 절충한 형태를 취하게 됨
- 양형기준의 형태는 유형분류기준,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등 3가지 범주로 구분되고, 각 범죄유형은 기본, 가중, 감경의 형량구간으로 나뉘며, 형량의 산정방식은 기본 영역의 형량구간에서 특별양형인자의 개수를 비교함으로써 가중과 감경의 형량구간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짐

###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제도의 성과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양형실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 이후 국민들의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여겨짐
- 그동안 양형에 대한 선행연구는 외국의 양형기준제도에 관한 소개, 양형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 양형기준의 준수율 및 양형인자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양형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는 물론 판결문자료, 설문조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양형기준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현행 양형기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II. 자료의 수집

### ■ 일반인 설문조사

- 양형기준 및 양형에 관한 일반인의 태도 및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정의하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현황(2015년 9월 기준)’을 참고하여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표집방법을 통해 표본을 할당하고, 온라인패널을 이용해 일반인 1,000명을 조사함

### ■ 판결문 수집

-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의 판결문을 비교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총 8개 검찰청에서 기소한 사건을 1차로 선정함
- 다음으로 1차로 선정된 판결문 중에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 기간인 2003-2004년, 그리고 시행이후 기간인 2013-2014년의 1심 판결문 가운데 성범죄군, 강도범죄군, 횡령·배임군에 해당하는 1심 판결문을 선정함
- 마지막으로 세 가지 범죄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부 범죄유형 및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총 1,878건의 1심 판결문 자료를 수집함(성범죄군 747건, 강도범죄군 345건, 횡령·배임범죄군 786건)

### ■ 빅데이터 수집

- 분석대상 시기를 양형기준제의 시행 전후로 하여, 제1기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제2기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제3기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2년씩 총 6년 동안 주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 트위터, 커뮤니티, 뉴스/기사보도 및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 등을 1차 분석하고, 1차 분석대상 중에서도 ‘형사처벌’, ‘형벌’, ‘형량’, ‘판결’, ‘집행유예’, ‘양형위원회’, ‘사법불신’, ‘봐주기’, ‘무죄’, ‘판사’ 등 약 10여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2차 분석대상을 선정함
- 1차 분석대상 4,057,764건 중에서 주요 키워드를 기준으로 관련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문서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차 분석대상이 된 문서의 수는 총 1,215,407건이며, 총 238,932,156건의 키워드를 분석함

## Ⅲ. 설문조사 결과

### ■ 양형기준에 대한 인지도

- 양형기준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10.9%만 ‘잘 안다’고 응답한 반면, 65.3%는 ‘들어본 적만 있다’, 23.8%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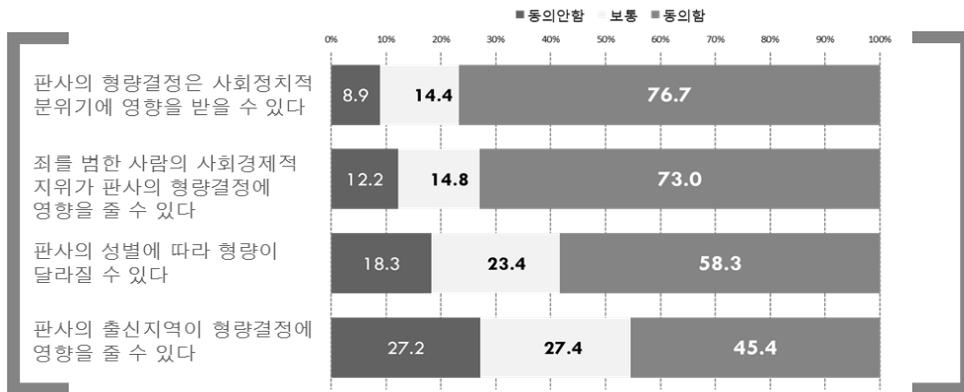


[그림 1] 양형기준제 인지도

- 양형기준제의 인지도는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별로는 50대,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평소 언론의 판결보도에 관심이 높을수록, 재판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높게 나타남

■ **법외적 요소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의 인식 정도**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외적 요소에 대해서 판사의 성별, 출신지역 등 판사의 개인적 특성보다 피고인의 사회경제지위나 사회정치적 분위기, 여론이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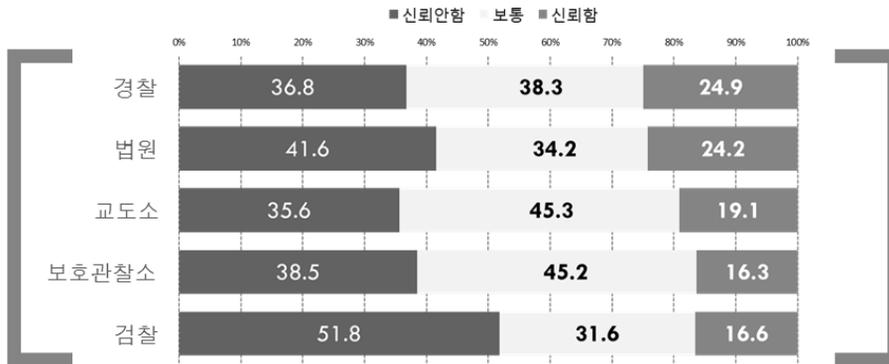


[그림 2] 법외적 요소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의 인식 정도

- 이러한 인식은 남성, 20~40대 연령층, 대졸이상에서 높았고, 양형기준제를 아는 사람일수록, 판결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재판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게 나타남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정도**

-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24.9%)이 상대적으로 신뢰정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법원(24.2%), 교도소(19.1%), 보호관찰소(16.3%), 검찰(16.6%)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정도

- 형사사법기관의 신뢰정도를 인구사회특성으로 비교해 본 결과, 30대 고학력층에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반면, 60대이상 저학력층에서는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양형기준의 효과성 인식

- 양형기준제도가 판결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적정성, 신뢰성에 각각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적정성보다 일관성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예측가능성 또한 높아 객관적인 양형기준에 의한 판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형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을 통해 사법신뢰도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 예측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판사의 재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할수록, 판결에 사회여론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양형기준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달리 말해,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기대는 형사사법기관의 신뢰가 높을수록, 판사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표 1〉 양형기준의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	2.95	17.84**	2.03	8.11**
<b>인구특성 변인</b>				
성별	0.01	0.14	0.01	0.16
연령	0.06	3.13**	0.05	2.51*
수입	0.07	2.82**	0.06	2.52*
교육수준	0.08	2.04*	0.07	1.73
<b>형사사법관련 변인</b>				
형사사법기관신뢰			0.13	3.86**
법집행공정성인식			0.08	2.52*
판결보도관심			0.06	2.29*
범죄피해경험			0.05	1.22
재판경험			0.09	1.80
$R^2$	0.022		0.053	
$N$	1,000		1,000	

\*p&lt;0.05 \*\*p&lt;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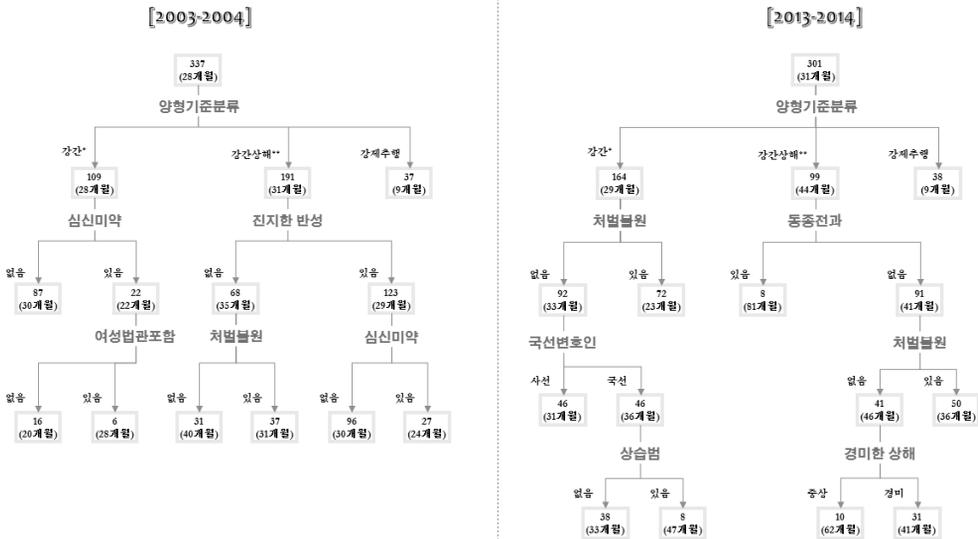
- 결국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양형기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역으로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제의 운용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제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는 상호 선순환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IV. 판결문 내용분석 결과

### ■ 성범죄군

#### 1) 선고형량의 변화

- 강간을 비롯해 강간상해, 강간치상 등 성범죄군의 판결문을 양형기준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약 28개월)에 비해 시행이후(약 31개월) 전반적으로 3개월가량 선고형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단위: 사례수

( )안의 개월 수는 소수점 반올림 수치임

\* 강간에 포함되는 세부 유형: 강간, 주거침입강간, 준강간, 친족에 의한 강간, 특수강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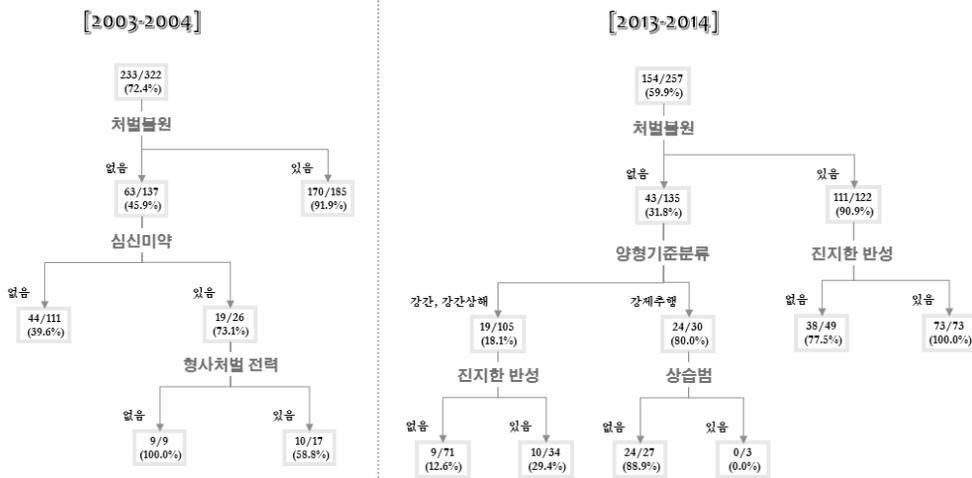
\*\* 강간상해에 포함되는 세부 유형: 강간상해, 강간치상

[그림 4] 성범죄 선고형량과 양형인자의 변화

- 이러한 선고형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 시행이전에는 심신미약과 진지한 반성이, 시행이후에는 처벌불원과 동종 전과유무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2) 집행유예의 변화

- 집행유예를 양형기준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 시행이전(72.4%) 대비 시행이후(59.9%) 집행유예의 비율이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대한 분석 결과, 양형기준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모두 처벌불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양형기준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방식이 더 다양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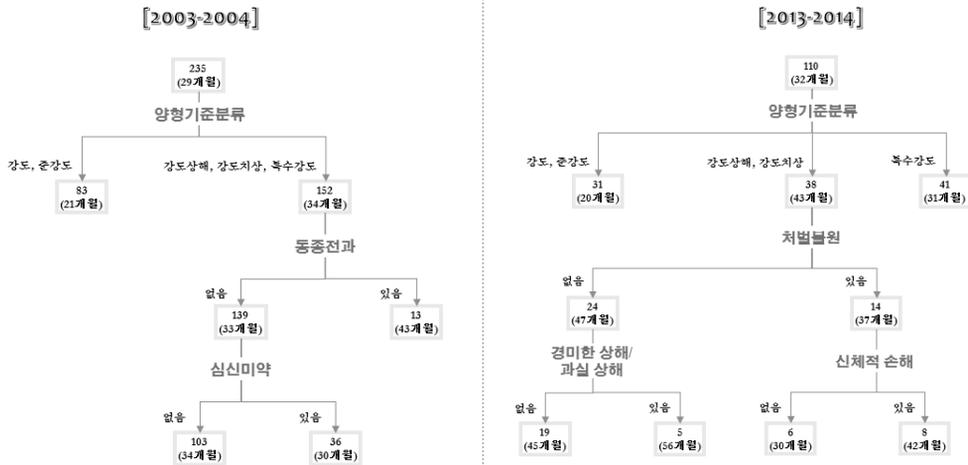
※ 단위: 사례수  
 ( )안의 비율은 (집행유예 사례수)÷(전체 사례수)

[그림 5]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과 참작사유의 변화

■ 강도범죄군

1) 선고형량의 변화

- 강도를 비롯해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 강도범죄군의 판결문을 양형기준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성범죄군과 마찬가지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약 29개월)에 비해 시행이후(약 32개월) 약 3개월 정도 선고형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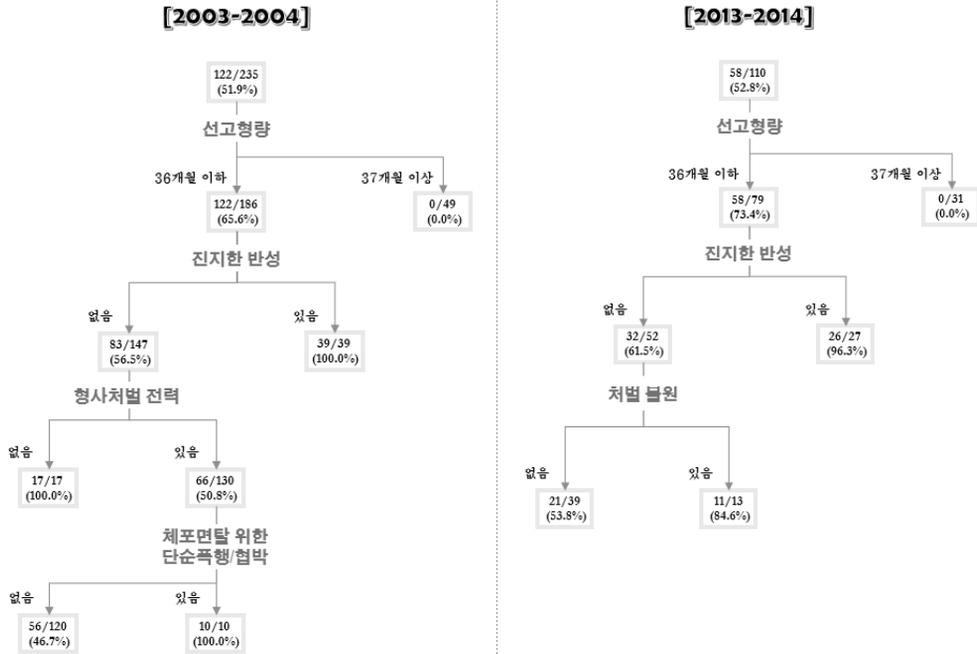
※ 단위: 사례수  
( )안의 개월 수는 소수점 반올림 수치임

[그림 6] 강도범죄 선고형량과 양형인자의 변화

- 이러한 선고형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상의 유형분류를 기준으로 양형기준 시행이전에는 강도상해·강도치상·특수강도가 하나의 범주로 다루어졌다면, 시행이후에는 강도상해·강도치상과 특수강도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임
- 그 밖의 요인으로 시행이전에는 동종전과와 심신미약이, 시행이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상해·손해정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발견됨

2) 집행유예의 변화

- 집행유예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51.9%)과 시행이후(52.8%)의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집행유예의 참작사유에 대한 분석 결과, 양형기준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모두 기본적으로 선고형량(3년 미만)과 진지한 반성유무가 중요한 사유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행이후에는 처벌불원이나 피해회복노력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위: 사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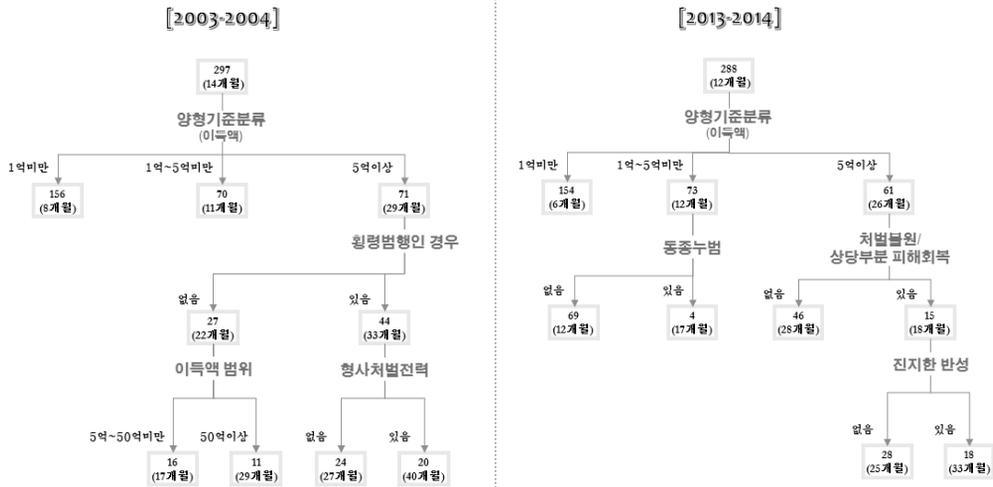
( )안의 비율은 (집행유예 사례수)÷(전체 사례수)

[그림 7] 강도범죄 집행유예 비율과 참작사유의 변화

## ■ 횡령·배임범죄군

### 1) 신고형량의 변화

- 업무상 횡령·배임을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횡령·배임 등 횡령·배임범죄군의 판결문을 양형기준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른 두 범죄군과 달리 시행이전(약 14개월)에 비해 시행이후(약 12개월) 2개월 정도 신고형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단위: 사례수  
( )안의 개월 수는 소수점 반올림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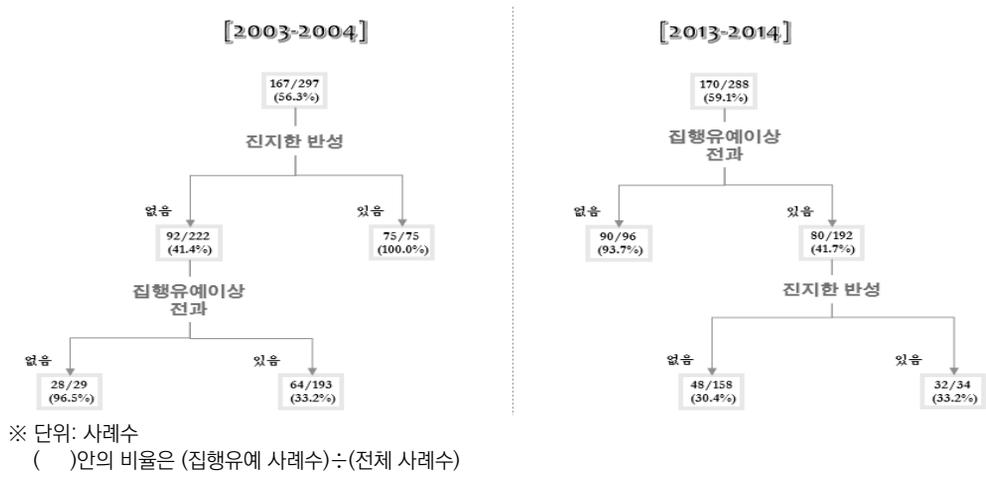
[그림 8] 형량·배임죄 선고형량과 양형인자의 변화

- 이러한 선고형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모두 양형기준 상의 분류기준인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나타난 가운데, 1억이상 5억미만(2유형)의 경우에는 형량이 1개월가량 증가한 반면에 1억미만(1유형)과 5억이상(3유형)의 경우에는 각각 2개월, 3개월 정도 형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요인으로 5억이상(3유형)에서 시행이전에는 형량범행유무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면, 시행이후에는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노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2) 집행유예의 변화

- 집행유예를 양형기준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 시행이전(56.3%)에 비해 시행이후(59.1%) 집행유예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2.8%),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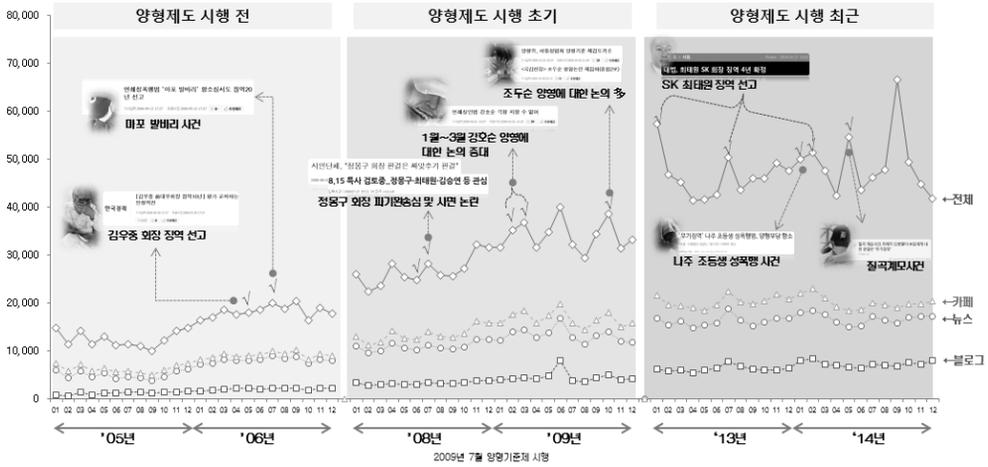
-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를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모두 진지한 반성과 범죄경력(집행유예이상의 전과)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행이전에는 진지한 반성이, 시행이후에는 범죄경력이 우선 고려되는 참작사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림 9] 횡령·배임죄 집행유예 비율과 참작사유의 변화

## V. 빅데이터 분석 결과

- 이번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양형기준제 시행 이전과 이후 양형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인터넷과 SNS에서 양형과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버즈는 평소 소에 거론되기보다는 주요 범죄사건이 발생할 때 높게 나타남
- 예를 들어, 양형기준제 시행 이전에는 김우중회장 사건, 마포 발바리사건을 전후로 버즈량이 많았고, 양형기준제도 시행 이후에도 최태원회장 사건,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칠곡계모사건을 전후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주요 범죄사건에 대한 버즈량 추이

- 범죄유형에 따라 양형관련 키워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횡령·배임죄의 경우에는 부정키워드에서 일부 긍정키워드로의 변화가 발견되었음
- 구체적으로 시행 이전에는 ‘유전무죄’, ‘재벌’과 같은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이례적’, ‘(양형기준) 통했다’, ‘좋다’ 등의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양형 결과와 관련한 키워드가 보다 다양해지는 동시에 범죄자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불만과 비난과 같은 부정적 반응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즉 시행 이전에는 ‘사형’, ‘낮다’, ‘못하다’ 등에서 시행 이후에는 여기에 더해 ‘사이코패스’, ‘화학적 거세’, ‘법감정’, ‘분노’, ‘개법’ 등 부정키워드가 많이 언급됨

[강력범죄 관련 주요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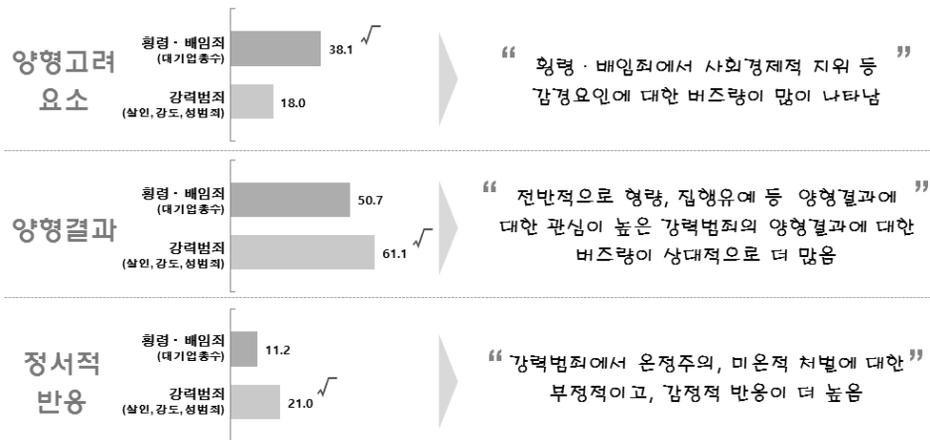


[횡령·배임죄 관련 주요 키워드]



[그림 11] 범죄유형별 주요 키워드 분석

- 양형과 관련한 문서와 내용을 양형 고려요소, 양형 결과, 그에 대한 정서·감정 반응 등 세 가지 범주에 따라 횡령·배임죄와 강력범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횡령·배임죄범죄에서는 ‘고령’, ‘경제기여’, ‘재벌’, ‘유전무죄’, ‘집행유예(3·5공식)’, ‘부당’, ‘불신’ 등 양형 고려요소 및 양형 결과에 대한 언급이 많았음
- 반면, 강력범죄에서는 ‘사형’, ‘솜방망이’, ‘강화’, ‘분노’, ‘화’ 등 양형 결과 및 정서·감정 반응과 관련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림 12] 범주별 버즈량 비교 및 특성

- 정서·반응을 중심으로 긍정적 키워드와 부정적 키워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전관예우’, ‘관행’, ‘권력’과 같은 키워드는 감소하고 ‘공정’, ‘평등’, ‘신뢰’와 같은 키워드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러나 ‘낮다’, ‘불신’, ‘불복’ 키워드 역시 증가하고 있어 양형기준제 시행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양형 결과를 중심으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음



[그림 13] 시기별 양형관련 긍정 및 부정키워드 비교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필요해 보임

## VI. 정책 제언

### ■ 양형기준체계의 합리화 및 양형위원회의 방향 재설정

- 현재의 양형기준에서 유형분류 기준은 법률상 범죄성립요건이 구체화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개념요소를 사용하고 있고, 소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은 주로 1개의 단일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범죄행위 유형을 반영하는 데에는 부족하며, 유형분류기준과 양형인자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중요한 법이론적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양형위원회는 현 양형기준을 새롭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양형기준이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 전에 구축된 형식적인 기준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특히, 양형인자는 독립적인 개념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들과 상호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으므로 양형인자를 파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추출하여 양형기준에 재배치하는 작업을 지양해야 함
-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양형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주장은 대법원과 양형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짐
- 따라서 법관이 사전에 행위와 행위자 요소를 상당부분 정형화한 자료뿐만 아니라 사후에 적정한 양형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양형을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의 양형기준에 대한 접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양형위원회는 단순히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능을 보다 확장하여 법관을 중심으로 교정당국, 피고인, 변호사, 검사, 나아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새로운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미국과 호주의 양형위원회는 양형통계를 끊임없이 시기별로 새롭게 제시하고 예산을 포함한 교정자원의 적절한 분배 문제까지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양형위원회의 역할을 단순히 양형기준 제시나 준수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범주에 기초한 통계 및 자료의 산출을 통해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임

#### ■ 양형정보의 공개 및 정례적인 컨퍼런스 개최

- 적절한 양형은 절차 참가자들에게 최대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관점에 기초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양형위원회는 양형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데 주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는 최근 재범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조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양형위원회가 이러한 데이터의 통합에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위원회에서 의원들이나 판사들에게 양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결과와 예측치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결정이 미칠 영향을 예측한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일례로 새로운 입법이나 양형기준이 수정될 경우 교도소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관련 범죄의 재범률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미리 예측해 봄으로써 그 효과를 새로운 법률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는 형사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민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주장보다는 ‘증거기반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보다 선호하며, 새롭게 채택된 형사정책이 범죄감소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중시 여기는데, 주요 국가들마다 중요한 사법개혁 정책에 이러한 평가원칙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음
- 만일 평가 결과, 새로운 개혁 정책이 범죄 감소 혹은 재범률 감소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일구어내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정책은 책임성(accountability)에 근거해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정책에 배정된 예산도 다시 배정해야 함
- 실제로 미국 연방양형위원회와 22개 주의 양형위원회 구성원들이 1년에 한번 정례로 개최하는 전미양형위원회협회(NASC, National Association of Sentencing Commissions)는 실무가는 물론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양형정책,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정보, 아이디어, 자료,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양형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이 정례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양형기준, 양형정책, 양형위원회와 관련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양형기준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짐

## ■ 사법부와 국민 간 소통증진을 위한 전략 마련

### 가. 프레임 전략

- 사법부와 국민들 간의 양형에 관한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형벌[사형]과 실제 양형을 비교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특정한 사건의 맥락 속에서 해당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람들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특정 범죄유형에 선고되는 평균 형량 혹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를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러한 기준 내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해야 함
-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 보면, 일반국민의 가혹한 형벌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언론에서도 범죄 과정이나 판결 결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 그리고 바뀐 내용을 포함한 양형기준 정보(형량 범위, 해당 범죄유형의 평균 형량)를 함께 보도할 필요가 있음
- 즉, 범죄사실 뿐 아니라 양형기준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제공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혹은 적절하지 않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사법기관과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신뢰를 위해 보다 생산적일 수 있음

### 나. 표적집단 전략

- 마케팅에서는 동일시장의 고객이라 하더라도 그 특성과 욕구가 매우 다양할 것으로 가정하고 시장을 세분화(segmentation)하고, 표적화(targeting)하며, 포지셔닝(positioning)을 통해 집중화 전략을 구사하거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전략이라고 주장함

- 사법기관의 대국민 홍보 전략도 이러한 마케팅의 전략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을 보다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형사사법과 관련한 국민의 범주를 피해자 집단, 가해자 집단, 젊은 사람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 소수민족 사람들로 구분하고, 각 집단 특성에 부합하는 메시지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가운데 피해자 집단, 가해자 집단, 젊은 사람들 세 집단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사람이야말로 형사사법의 주요한 ‘잠재고객 (clients)’으로 간주함
- 이러한 잠재고객에게 학교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법시스템을 접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형사재판의 과정을 접하고 사법시스템이 실제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전달체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 많은 나라에서 범죄통계 혹은 사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정부의 노력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범죄통계나 사법정보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특정한 하위집단, 즉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임
- 많은 나라들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법기관의 의사소통기술이 부족하며, 학자들 역시 너무나 고립되어 난해한 학술지나 세미나를 통해서만 토론하고 비판할 뿐 일반인과의 소통에는 무관심한 편임
-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보듯이 일반인에게도 범죄사실 및 기본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때 일반인과 법조인 간에 인식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음

- 그러므로 일반국민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언론보도에만 의존하거나 기존의 딱딱하고 어려운 법교육 콘텐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프트 콘텐츠 또는 문화 콘텐츠 (양형 다큐멘터리, 알기쉬운 판례, 쉽게 보는 형사사법통계 등)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범죄통계의 활용

- 일반국민이 범죄자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 스스로 범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범죄율이 몇 년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나타남
- 그로 인해 실제로는 범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범죄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사법기관에서 발표하는 범죄통계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언론의 입장에서는 범죄의 감소라는 소재가 그다지 매력적인 보도주제가 아니라는 이유가 지적되고 있으며, 설사 범죄가 감소한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전체 경향을 보여주는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보도는 1년 중 단 하루일 뿐 나머지 364일은 개인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사건을 보도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범죄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에서도 경찰에서 발표하는 경찰통계, 검찰과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범죄분석, 범죄통계와 사법통계를 포함해 발표하는 범죄백서,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 단위로 발표하는 범죄피해조사 등 다양한 공식범죄통계가 있으나 이러한 공식통계자료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일부에 국한된 것이 현실임
- 일반국민들이 실제 경향과 무관하게 범죄발생 혹은 범죄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느낄수록 범죄자에 대한 처벌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며, 이는 ‘형벌의 포퓰리즘(penal populism)’을 가져올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대다수 합리적인 양형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죄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범죄통계나 사법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단순히 통계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에서 범죄통계 및 사법정보가 담고 있는 의미와 해석을 함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KIC ISSUE PAPER 2016. 6. 제4호

---

##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

발행인 | 김진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 575-5282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쇄처 | 삼신인쇄  
(02) 2285-6478

---

